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0. 4 선고 2020가단840(본소), 2020가단55192(반소) 판결
[지체상금 등 청구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양성국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변 론 종 결 2022. 9. 6.

판 결 선 고 2022. 10.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63,016,600원과 그 중 27,716,600원에 대하여는 2018. 5. 9.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0.부터, 32,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4.부터 각 이 사건 2021. 2. 1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31,8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 (주)C(이하 ‘D’이라 한다)에게 원주시 E 대 373㎡에서 기존 한옥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을 2017. 2. 10.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합계 9억1,300만원(= 철거공사비 3,300만원 + 신축공사비 8,800만원, 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그 중 2억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상호 ‘F’)는 2018. 1. 3.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8. 1. 4.부터 2018. 3. 15.까지, 공사대금 7,48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2018. 7. 15.경 D로부터 바닥문틀 등 설치공사를 대금 1,1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추가로 하도급받았다(그에 따라 피고가 수행한 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다. 도급계약상으로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지급하는 선급금 2억원 외에는 D가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준공까지 마치기로 약정한 것이지만, D은 실제 공사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는 계속 지연되었다. 이에 원고가 당초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것과는 달리, 선급금 2억원 외에도 D이나 그 하도급업체들에게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2019년 상반기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다. 원고는 2019. 7. 11. 원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9. 7.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2020. 2. 12. 원주지원 2020가합45호로 D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합계 278,106,786원(= 이 사건 공사가 703일간 지연됨에 따른 손해 181,017,579원 +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97,089,207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D은 2020. 8. 20.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억9,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에서는 원고와 그 배우자 G가 각 1/2 지분을 보유한 공동건축주로서 공동으로 본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부부의 연대채권채무관계는 이 사건 쟁점과는 무관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와 그 배우자 G를 구분하지 않은 채 ‘원고’라고만 표시한다).

마.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축주인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미지급 대금 3,180만원(= 당초 약정공사의 미지급 대금 2,080만원 + 추가공사대금 1,100만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원주지원 2020. 3. 17.자 2020카단120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같은 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2020. 3.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지연, 노무비 과다청구로 인한 손해배상금 63,016,600원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는 한편, 2020. 6. 29. 이 사건 가압류의 해방공탁금 3,180만원을 공탁하여(원주지원 2020년금제620호) 그 다음날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는 2020. 6.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3,18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주)H는 2017. 3. 10.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2017. 4.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소방공사 부분을 직접 도급받았는데, D로부터 기계설비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1. 11. 3. 원고를 상대로 원주지원 2021가단61392호로 미지급 기계설비공사대금과 기계소방공사대금 합계 7,090만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 “도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창호공사 대금 2,200만원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다.

사. 관련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약 2년간 쌍방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해 본 결과, D이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액 약 106,865,698원(= 약정 공사대금 9억1,300만원 -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96,908,370원 -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한 금액 184,525,932원 - 3개 하도급업체가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공사대금 124,700,000원)과 원고가 D에 대하여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액 약 107,630,501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54,000,000원 + 하자보수비 53,630,501원)이 얼추 비슷하므로, 이를 상계하여 D과 원고 사이에서는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하되, 3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은 원고가 책임지고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2022. 4. 15.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2022.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아래 결정사항의 “원고들”은 원고와 G 부부, “피고”는 D을 의미한다).

결정사항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 11. 10.자 원주시 E 지상 한옥주택 철거공사(계약금액 33,000,000원) 및 2016. 11. 29.자 위 지상 주택 및 근린시설 신축공사(계약금 88,000,000원)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일체의 채권 채무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2. 원고들은 제1항 기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하도급업체(H, F, I)에 대한 공사대금 124,700,000원 상당을 책임지고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결정 확정 후 위 하도급업체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배상한다.
3. 원고들은 본소 청구를, 피고는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 근거] 갑 제1~11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8. 3. 15.까지 완료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2019. 7. 3.에야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게 2018. 3. 16.부터 2019. 7. 3.까지 총 475일분 지체상금으로 32,300,000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부가세를 제외한 약정공사대금 6,800만원 $\times$ 0.1%/일 $\times$ 47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약정공사대금은 6,800만원인데, 피고는 D로부터 2,600만원을, 원고로부터 4,300만원을 지급받아 총 6,9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100만원(= 총 수령한 공사대금 6,900만원 - 약정공사대금 6,8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2종류의 견적서, 즉 을 제2호증의 1(견적서), 갑 제8호증(세부견적서)을 제출하였는데, 갑 제8호증(세부견적서)에서 이미 노무비를 반영한 견적금액 37,368,000원을 제시하였음에도, 제2호증의 1(견적서)에서는 위 견적금액을 자재비 38,682,200원으로 표시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노무비 29,716,600원을 추가하여 견적금액을 6,800만원(100만원 미만 금액은 버림)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약정공사대금에는 노무비 29,716,600원이 중복계상되어 있다. 이처럼 중복계상된 노무비 29,716,600원은 피고가 D과 원고를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당초 약정공사대금 6,800만원에 한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을 뿐, 추가공사대금 1,100만원 부분에 관해서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당초 약정공사대금 6,800만원이 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 6,800만원을 전부 지급받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미지급 대금 3,180만원(= 당초 약정공사의 미지급 대금 2,080만원 + 추가공사대금 1,100만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부당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로서 해방공탁금 3,180만원에 대하여 공탁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요지

(1) 갑 제3호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D로부터 2,600만원, 원고로부터 4,3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가 그 중 1,500만원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피고에게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하기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당일인 2018. 5. 8. D에게 1,500만원을 다시 송금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D 및 원고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모두 5,400만원(= 2,600만원 + 4,300만원 - 1,500만원)뿐이다.

(2)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면, D은 원고에게 약정공사대금 6,800만원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지급보증은 부가세 상당액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1,100만원 어치의 추가공사에 대하여 원고, D, 피고 3자간 합의가 있었으므로, 추가공사대금에 관해서도 원고의 지급보증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미지급 대금 합계 3,180만원(= 당초 부가세 포함 약정공사대금 7,480만원 + 추가공사대금 1,100만원 - 기지급 5,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다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당초 약정공사기간이 2018. 1. 4.부터 2018. 3. 15.까지 71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475일분 지체상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은 인테리어공사인데, D에게 시공책임이 있는 선행 공종이 완료되지 않아 원고가 제때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지연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지체상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8. 1. 3.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액 6,800만원과 이에 대한 10%의 부가세 상당액 680만원을 합한 7,480만원을 계약금액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공급가액의 부가세 상당액 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2종류의 견적서에 노무비를 중복계상하는 방법으로 D과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견적서), 갑 제8호증(세부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노무비 중복계상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8. 1. 3. 피고에게 하도급준 공사는 2~4층 천정공사(견적금액 37,368,000원), 2~4층 벽체공사(견적금액 22,522,400원), 1층 공사(견적금액 8,508,400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 제8호증(세부견적서)은 그 중 2~4층 천정공사에 관한 것이고, 을 제2호증의 1의 둘째 쪽(견적서)은 세 부분의 세부견적금액을 단순 집계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아래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3,1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네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D의 공사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본질적으로 D이 하도급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한 사항(선급금 2억원 외에는 D이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준공까지 마치기로 함)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에 관하여 D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관련사건의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을 통해서 D의 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를 통해 대부분 전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3,180만원을 포함하여 3개 하도급업체의 하도급공사대금 1억2,470만원을 원고가 책임지고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여전히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지급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은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것과 모순된 행위로서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첫째 쪽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8.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D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도 이를 전제로 지급보증을 하였던 사실, D은 원고와의 상의 하에 2018. 7. 15. 피고에게 바닥문틀 등 설치공사를 대금 1,1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추가로 하도급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비록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보증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건축주로서 D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게 된 경위, 설계변경의 경우 대금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1,100만원 어치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지급보증은 1,100만원 어치의 추가공사대금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미지급 대금 합계 3,180만원(= 당초 부가세 포함 약정공사대금 7,480만원 + 추가공사대금 1,100만원 - 기지급 5,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